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15일, 백종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백종헌의원)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 및 판매 목적의 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업자·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환불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외에서 모방·위조된 화장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처벌 대상의 명확성임.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 등을 처벌하려 하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판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지식재산처·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도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임.

둘째, 수사 주체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임. 해당 행위가 「화장품법」상 범죄로 규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도 수사할 수 있게 됨. 화장품 유통 단속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이미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와 기관 간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수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임.

셋째, 조치 요청 대상의 범위임. 개정안의 금지행위는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진열인데, 조치 요청은 ‘제조·수입’ 사실을 확인한 경우까지 포함함. 제조·수입에 대한 규제는 다른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화장품법」에서 영업자·판매자에 대한 조치 요청 권한과 수용 책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지원 필요성임. 해외 불법 화장품 대응과 수출 규제 지원을 위한 센터 지정·지원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장품 관련 법률안 2건의 규제 지원·해외 진출 지원 내용과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명칭을 화장품관리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그 소속과 의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를 변경·삭제하여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체계와의 중복 및 혼선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의 대상과 내용을 정비하며, 해외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모니터링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조문과 부칙을 정비하여 법률 간 인용관계 및 시행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지식재산권 보호·집행체계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용어를 변경·삭제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안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 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대상을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화장품의 영업자·판매자로 변경하고,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판매 중지, 사이버몰 판매정보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으로 수정함(안 제16조제3항).
- 다. 사이버몰의 정의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규정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3호).

라.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조문번호 변경 및 다른 법률의 인용
조문 정비 규정의 시행일을 해외 안전 정보 수집 규정과 같이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안 부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안 제1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 제33조의3 제목 중 “안전 정보의 수집”을 “규제 정보의 수집등”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해외 지식재산 침해”를 “위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안 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1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호의2 또는 제4호”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u>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u> 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 ----- ----- -----사 <u>이 버 몰 (컴 퓨 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u> <u>이하 같다)</u> ----- ----- -----.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6조(판매 등의 <u>금지</u>) ① ----- -----	제16조(판매 등의 <u>금지 등</u>) ① ----- -----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
로 보관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
게 판매하는 화장
품에 한한다.

1. ~ 4. (생략)

<신 설>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라 한다)

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
된 상표권

나.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
된 특허권

[illegible]

1. ~ 4. (개정안과
같음)

<삭 제>

② (생략)
<신설>

다. 「디자인보호
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
자인권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제5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화장품이 제조
· 수입 · 판매되는
사실을 통보 받거
나 이를 확인한 경
우에는 해당 영업
자 또는 판매자에
게 소비자 피해 방
지를 위해 사이버
몰 게시물 삭제,
반품, 환불 등 필
요한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영업자 또
는 판매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제1항제4
호에 해당하는 화
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
자에게 소비자 피
해 방지를 위해 판
매 중지, 사이버몰
에 게재된 해당 화
장품에 관한 판매
정보의 삭제, 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영업자 또
는 판매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 품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u>이에 따라야 한다.</u> 법률 제21302호 화장품 품법 일부개정법률 <u>제33조의3(해외 안전</u> <u>정보의 수집) ① 식</u> <u>품의약품안전처 장</u> <u>은 해외 불법 화장</u> <u>품 생산·유통 근</u> <u>절, 수출 규제 지원</u> <u>및 규제 관련 무역</u> <u>장벽을 해소하기</u> <u>위하여 다음 각 호</u> <u>의 사업을 추진할</u> <u>수 있다.</u> 1. <u>지식재산처장과</u> <u>협업하여 실시하</u> <u>는 해외 지식재</u> <u>산 침해 화장품</u> <u>생산·유통 정보</u> <u>등 모니터링</u> 2. <u>화장품 수출 관</u> <u>련 규제정보 제공</u> <u>및 컨설팅</u> 3. <u>화장품산업 수출</u> <u>관련 규제기관·</u> <u>단체와의 협력체</u>	법률 제21302호 화장 품법 일부개정법률 <u>제33조의3(해외 규제</u> <u>정보의 수집등) ①</u> ----- ---해외 불법 화장 품----- ----- ----- ----- ----- ----- -----. 1. ----- ----- ----- 위조 ----- ----- ----- 2. <u>(개정안과 같음)</u> 3. <u>(개정안과 같음)</u>
--	---	---

	<u>계 구축</u> <u>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 허가 지원</u> <u>5. 화장품의 허가·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u> <u>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4. (개정안과 같음)</u> <u>5. (개정안과 같음)</u> <u>6. (개정안과 같음)</u> <u>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u>
--	--	--

	지원할 수 있다.	고,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수행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 별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는 제18조의4를 준 용한다.
	③ <u>화장품글로벌규 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안 제3항과 같 음)
제33조의3(화장품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생 략)	제33조의4(화장품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현행 제33 조의3과 같음)	제33조의4(화장품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개정안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 ----- ----- ----- ----- -----	제36조(벌칙) ① --- ----- ----- ----- ----- -----

1. ~ 3. (생략) 4. 제16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4호 또는 제5호--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신설></u>	-----. 1. ~ 3. (개정안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삭제></u>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u>
--	--	---

	<u><신 설></u>	<u>시행한다.</u> <u>제2조(다른 법률의</u> <u>개정) 법률 제2193</u> <u>9호 화장품산업 육</u> <u>성 및 지원에 관한</u> <u>법률 일부를 다음</u> <u>과 같이 개정한다.</u> <u>제29조 제1항 중</u> <u>“ 「화장품법」 제3</u> <u>3조의3”을 “ 「화장</u> <u>품법」 제33조의4”</u> <u>로 한다.</u>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같은 법에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

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3조의 3”을 “제33조의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 제33조의4,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939호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화장품법」 제33조의3”을 “「화장품법」 제33조의4”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u>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u> 에서 직접 구매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u>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를 방지
를 위해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화장품에 관한 판매정보의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u>제33조의3</u>(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략)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u>제33조의3</u>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u>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3조의4</u>(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행 제33조의3과 같음)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33조의4</u>----- ----- ----- -----.
--	---